

<붙임2>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사유

○ 연수전은 1902년 고종의 기로소 입소를 기념하여, 1904년에 세운 기로소 원당으로서, 고운사 내에 있던 영조의 기로소 봉안각(1745-1749)의 전례를 쫓고, 기로소에 있던 영수각(1719)을 모범으로 세워진 대한제국기의 황실 기념 건축물이다. 기록이 분명치 않은 태조의 기로소 입소를 제외하고, 조선 시대에 실제로 실행된 세 번의 국왕의 기로소 입소, 즉, 숙종, 영조, 고종의 기로소 입소 건과 모두 연결되어 있는 기로소 원당 건축으로서 가치가 높다.

○ 고운사 연수전은 솟을 삼문 형식의 정문인 만세문과 사방으로 담장으로 사찰 내의 다른 구역과 구분되는 독립된 구획을 이루고 남향을 하고 있다. 본전 건물은 3단의 다듬은 돌 석축 위에 있으며, 정면3칸 측면3칸의 단층 팔작집으로, 정방형에 가까운 평면을 가진다. 한 가운데 자리한 중앙칸을 어첩 봉안실으로 삼고 사면에 퇴를 두었다. 12주의 기둥 모두 원주로 하였으며, 이익공식 공포를 사용하였는데, 각 어칸에는 주간에 1구씩의 익공을 두고 있다. 기둥머리 이상의 부분에 화려한 금단청을 하였고, 천장에는 다른 곳에서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용과 봉, 해와 달, 학과 일각수, 소나무와 영지, 연과 구름 등 다양한 주제의 채색 벽화가 가득하다.

○ 고운사 연수전은 조선시대 국왕의 기로소 입소를 기념하는 건축물로서 원형을 유지하고 있는 유일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비록, 지금의 건물은 1904년에 만든 것이지만, 기록에 전하는 1719년 건립의 기로소 영수각의 형태를 잘 반영하고 있어서 18세기 당시의 기로소 어첩 봉안각 형식을 알 수 있는 자료가 될 뿐 아니라, 사찰 내에 먼저 있던 1749년 건립의 기로소 봉안각의 선례를 따른 것으로서 조선후기 왕실과 불교의 관계 등을 보여주는 자료가 된다.

○ 또한 고운사 연수전에 있는 단청과 벽화는 매우 수준 높은 금단청의 사례일 뿐 아니라, 대한제국 황실을 상징하는 여러 도상들이 풍부하여 역사적 가치를 가지며, 같은 시기에 행해진 기념비전의 건축과 왕릉 비각의 형식 변화 등과 함께 대한제국기 황실 전범에 따른 전통적 기념비의 변화 상황을 증거하는 자료가 된다.

○ 전체적으로 보아, 규모가 작지만 황실 건축의 격에 어울리는 격식과 기법, 장식을 가지고 있는 수준 높은 건축물이며, 그 기능과 건축 형식의 면에서 다른 예를 찾아보기 힘든 귀중한 사례로 볼 수 있다.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20-29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3조」별표 10에 의한 배출시설의 오염물질 발생량 산정을 위한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0년 8월 31일

국립환경과학원장

배출시설의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3조 별표10 규정에 따른 배출시설의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라 함은 당해 배출시설의 단위연료 사용량, 단위제품 생산량, 단위원료

사용량, 단위폐기물 소각량 또는 처리량(이하“단위량”이라 한다)당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량을 말한다.

2. “방지시설의 효율”은 당해 배출시설에 설치된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의 처리효율을 말하며, 처리효율은 해당시설 설치 시 제시된 설계효율을 기준으로 한다.

3. “기타연료”라 함은 시행규칙 제43조 별표10 제1호 가목에서 규정한 연료 이외의 연료를 말한다. 제3조(적용 대상시설) 이 고시의 적용대상 시설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시행규칙 제43조 별표10 제1호 가목의 연료별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를 적용 받는 연소시설 이외의 연료사용시설 및 기타연료 사용시설
2. 연료를 사용하지 않는 시설 중 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배출시설
3. 시행규칙 제5조 별표3 제2호 나목 20)의 폐수·폐기물·폐가스소각시설

제4조(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 제3조에서 정한 적용 대상시설의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는 별표1 내지 별표3 과 같다.

제5조(배출계수의 적용) 여러 가지 물질을 혼소하거나 오염물질 배출계수가 각각 다른 경우 해당되는 배출계수 중 가장 큰 값을 적용한다.

제6조(대기오염물질 발생량 산정)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산정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제3조 각호의 시설 중 여러 개의 배출시설이 일련 또는 연속된 공정으로 이루어져 최종배출구로만 배출되는 시설은 최종배출구에서의 발생량만을 적용한다.

1. 제3조에서 정한 적용대상시설에서의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은 제4조의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가. 시간당 대기오염물질 발생량(kg/시간)

$$= \text{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kg/톤, kg/kℓ, kg/103m}^3\text{)} \times \text{시간당 단위량(톤/시간, kℓ/시간, 103m}^3\text{/시간 등)}$$

나. 연간 대기오염물질 발생량(톤/년)

$$= \text{시간당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times \text{일일가동시간} \times \text{연간가동일수}$$

2. 제1호의 방법으로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산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인정하는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를 적용하여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을 산정 할 수 있다.

3. 해당 배출시설의 배출계수를 전혀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론적으로 산정한 오염물질 발생량 자료를 행정관청에 제출하여 인정되는 경우 중 규모 산정을 위한 오염물질 발생량으로 적용할 수 있다.

4. 제1호 제2호 제3호의 방법으로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산정시 다음 각 목의 배출시설에 설치된 방지시설에서 제거된 먼지의 전량이 원료 또는 제품으로 회수되는 경우에는 “방지시설 효율에 따른”먼지 발생량을 감할 수 있다.

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조 별표3 2. 나의 6) 기초유기화합물제조시설 및 가스 제조시설, 7) 기초무기화합물 제조시설, 15)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시설, 20) 폐수·폐기물·폐가스 소각시설 (소각보일러를 포함한다), 21) 폐수·폐기물 처리시설, 23) 고형연료·기타연료 제품 제조·사용시설 및 관련시설, 26) 입자상물질 및 가스상물질 발생시설 등 각 배출시설의 선별 및 분쇄시설

나.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조 별표3 나의 20) 제1차 금속 제조시설 중 가.금속의 용융·용해 또는 열처리시설

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조 별표3 나의 26) 입자상물질 및 가스상물질 발생시설 마) ①호의 고체입자상물질 저장시설

라.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조 별표3 제2호나목21)라) 그 밖의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시설 중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이거나 용적이 3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중 밀폐된 자동 연속 혼합방식인 시설. 밀폐된 자동연속 혼합방식인 시설은 공정 전체가 자동화 시스템(프로그램)에 의해 가동되는 밀폐된 연속공정으로써 여과집진기 등 방지시설에 포집된 먼지가 시스템에 의해 외부에 반출없이 자동으로 전량 제품제조공정(혼합시설)에 투입되는 시설을 말한다.

제7조 (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94호)에 따라 2019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표 및 전문은 국립환경과학원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0-50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0년 8월 31일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 성명 | 생년월일 | 성별 | 종전국적 | 예정등록기준지 | 한국국적 상실일 | 상실사유 |
|-------|------------|----|------|--------------------|------------|---------------|
| 박영범 | 1979.**.** | 남성 | 일본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 | 2019.11.01 | 외국국적취득 |
| 김요한 | 1999.**.** | 남성 | 일본 | 전라북도 남원시 ***** | 2020.06.10 | 외국국적취득 |
| 장화숙 | 1957.**.** | 여성 | 일본 | 부산광역시 서구 ***** | 1983.09.24 | 외국국적취득 |
| 김동한 | 1993.**.** | 남성 | 일본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 | 2020.05.26 | 외국국적취득 |
| 윤영자 | 1953.**.** | 여성 | 일본 | 전라남도 해남군 ***** | 1984.03.08 | 외국국적취득 |
| 춘강대창 | 1987.**.** | 남성 | 일본 | 충청북도 보은군 ***** | 1994.09.05 | 외국국적취득 |
| 백경사 | 1963.**.** | 남성 | 일본 | 경상남도 거제시 ***** | 2019.09.19 | 외국국적취득 |
| 백영리 | 1960.**.** | 여성 | 일본 | 경상남도 거제시 ***** | 2019.09.19 | 외국국적취득 |
| 김굉용 | 1991.**.** | 남성 | 일본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 | 2020.04.03 | 외국국적취득 |
| 김창모 | 1980.**.** | 남성 | 일본 | 경상북도 안동시 ***** | 2019.10.15 | 외국국적취득 |
| 김이승 | 1988.**.** | 남성 | 일본 | 경상남도 산청군 ***** | 2020.05.29 | 외국국적취득 |
| 이명희 | 1989.**.** | 여성 | 일본 | 경상북도 의성군 ***** | 2020.04.03 | 외국국적취득 |
| 박목자 | 1970.**.** | 여성 | 일본 | 서울특별시 종로구 ***** | 2019.12.09 | 외국국적취득 |
| 유수기 | 1982.**.** | 남성 | 일본 | 경상남도 합천군 ***** | 2019.08.21 | 외국국적취득 |
| 이정자 | 1959.**.** | 여성 | 일본 | 경상남도 김해시 ***** | 2020.05.07 | 외국국적취득 |
| 고박미 | 1970.**.** | 여성 | 일본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 2020.06.04 | 외국국적취득 |
| 안유가 | 1990.**.** | 여성 | 일본 | 부산광역시 강서구 ***** | 2020.02.21 | 외국국적취득 |
| 본강가오루 | 1961.**.** | 여성 | 일본 | 전라남도 영암군 ***** | 1982.08.15 |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
| 박이지 | 1982.**.** | 여성 | 일본 | 경상북도 청도군 ***** | 2020.04.09 | 외국국적취득 |
| 윤덕일 | 1979.**.** | 남성 | 일본 | 부산광역시 영도구 ***** | 2020.04.21 | 외국국적취득 |